

6. 라트비아(Latv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2년
- 현행법 : 1995년(사회보험), 1997년(사회보험), 2000년(개인계좌)
2002년(사회부조), 2003년 시행

2. 제도형태

- 기초(장애인 돌봄 수당), 사회보험(장애급여), 명목확정기여제도(NDC), 의무 개인계좌, 사회부조제도
주: 지자체에서 공핍한 사람에게 조건부로 사회부조급여(자산조사 및 조건부) 지급

3. 적용대상

- 노령연금(장애연금)
 - 근로자, 자영자, 18세 미만 자녀 부양자, 출산급여, 부모급여 수급자
 -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정상 은퇴연령 미도달 자영자의 배우자, 중소기업 근로자는 임의가입 가능
- 명목확정기여제도(노령/유족급여) : 근로자 및 자영자, 장애를 가진 실직자특정 사회보험 급여수급자, 군인 해외 근무 외교관 배우자단기 공공근로 수행자
 - 당연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15세 이상의 라트비아 영주 거주자,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정상 은퇴연령 미도달 자영자의 배우자, 중소기업 근로자는 임의가입 가능
- 의무 개인 계좌(노령연금) : 2001년 7월 1일 30세미만 근로자 또는 자영자
2001년 7월 1일 30세부터 49세까지는 임의 적용
- 기초/사회부조 : 라트비아 영주권자 및 영주권 및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비 시민권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
- 사회보험, NDC, 의무개인계좌 : 근로소득총액의 11%에 개인계좌 행정비용
 - 가입자와 사용자의 총 보험료(소득의 35.09%) 중 14%는 NDC 연금의 재원으로, 6%는 개인계좌의 재원으로 총당됨.
 - 가입자와 사용자의 총 보험료는 또한 장애연금, 질병 및 출산급여, 부모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, 실업급여의 재원이 됨.
 - 월 임금근로자의 경우, 보험료 계산을 위한 최저 연 임금총액은 법정 연 최소 임금; 주급근로자의 경우, 보험료 계산을 위한 최저 일 급여는 법정 최저 시간급
 - 법정 연 최저 임금은 5,160유로
 - 주 40시간 기준 법정 최저시간급은 2.69유로
 -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연 최대 소득은 55,000유로
- 기초/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, NDC, 의무개인계좌 : 신고소득총액의 32.15%
 - 자영자의 총 보험료 중 14%는 NDC 연금의 재원으로, 6%는 개인계좌의 재원으로 총당됨.
 - 자영자의 총 보험료는 또한 질병 및 출산급여, 부모급여, 의료급여의 재원이 됨.
 - 보험료 계산을 위한 최저 연 신고소득은 법정 연 최저 임금
 - 법정 연 최저 임금은 5,160유로
 -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연 최대 소득은 55,000유로
- 기초/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, NDC, 의무개인계좌 : 소득총액의 24.09%
 - 가입자와 사용자의 총 보험료(소득의 35.09%) 중 14%는 NDC 연금의 재원으로, 6%는 개인계좌의 재원으로 총당됨.
 - 가입자와 사용자의 총 보험료는 또한 장애연금, 질병 및 출산급여, 부모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, 실업급여 재원이 됨.
 - 월 임금근로자의 경우, 보험료 계산을 위한 최저 연 임금총액은 법정 연 최소 임금; 주급근로자의 경우, 보험료 계산을 위한 최저 일 급여는 법정 최저 시간급
 - 법정 연 최저 임금은 5,160유로
 - 법정 최저시간급은 2.69유로
 -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연 최대 소득은 55,000유로
- 기초/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, NDC, 의무개인계좌 : 라트비아에 살면서 특정 사회보험 수급자, 18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보거나 장애가 있는 실직자, 공공부분 일시 근로자 군인이나 해외 외교관 배우자의 보험료를 사용자로서 납부함.
- 기초/사회부조 : 총비용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NDC 및 의무개인계좌
 - 최소 15년(2025년 20년으로 상향)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63세 3개월(2015년 65세 도달때까지 연간 3개월씩 연장)도달자
 - 장애가 있는 사람, 대가족(5명 이상 자녀)이거나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, 1996년 이전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 사람, 체르노빌 사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,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특별조건이 적용됨
 - 조기연금 : 3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자로 정상 퇴직연령 전 2년 전부터 지급
 - 장상퇴직연령까지 고용중단 필요
 - 연기연금 : 연금은 연기될 수 있음. 연령제한은 없음.
 - 노령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- 국가사회보장노령급여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사회보험이나 NDC연금 또는 산재급여(장애인 대상 유족연금 제외) 수급 자격이 없고 15년 미만 가입기간이 있는 67세 9개월 도달자. 최종 연속 12개월을 포함해 최소 60개월 동안 라트비아 거주 필요
 - 고용 중단 필요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장)
 - 가입자는 장애판정을 받아야 하고 최소 3년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함. 장애정도에 따라 3개의 그룹이 있음; 그룹1(상시간호를 요하는 심각한 장애), 그룹2(상시간호를 요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장애), 그룹3(중간정도 장애)
 - 장애정도는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국립의료위원회에서 판정함
 - 장애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
- 국가사회보장장애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18세 이상인 장애인에게 지급.
 - 실직, 사회보험이나 NDC연금 또는 산재급여(장애인 대상 유족연금 제외) 수급 자격이 없고 최종 연속 12개월을 포함해 최소 60개월 동안 라트비아 거주 필요
 - 고용 중단 필요
 - 장애는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국립의료위원회에서 인정필요
- 장애인 돌봄수당(기초) :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18세 이상 장애인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NDC)
 - 사망자는 사망 당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권자
 - 가입자는 정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
 - 자격 있는 유족은 18세(정규 학생이면 24세,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 미만 가입자자녀(입양자녀 포함),근로능력이 있는 부모가 없는 18세(정규 학생이면 24세,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음)미만 피부양 형제·자매·손자녀
 - 유족급여의 국외지급 가능
- 배우자급여(NDC)
 - NDC수급자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NDC 노령, 장애, 또는 산재연금을 받는 유족배우자에게 지급됨
- 사망수당(NDC)
 - 가입자, 실업자, 연금수급자 또는 가입자의 피부양가족의 사망 시 지급. 가입자나 가입자의 가족은 가입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 시 지급.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음.
- 국가사회보장고아급여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사회보험 혹은 NDC연금 혹은 산재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18세(학생이나 직업훈련중인 경우는 21세, 정규대학생은 25세) 미만 미혼 유족자녀에게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NDC)
 - 연금액은 가입자의 보험료, 소득지표 변경에 따른 연간 자본성장율, 평균 기대수명에 따라 결정됨
 - 월 최소연금액
 - 가입기간 20년까지는 70.43 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

117.39유로),

- 가입기간 21년 ~ 30년까지는 83.24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138.74유로),
 - 가입기간 31년 ~ 40년까지는 96.05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160.08유로),
 - 가입기간 41년 이상은 108.85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181.42유로)
- 조기연금 : 가입자가 정상 퇴직연령이 될 때까지 노령연금액의 50%가 지급됨. 이후는 노령연금으로 대체
 - 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
 - 급여조정 : 매년 10월 1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보험료 임금 지수에 따라 조정

- 노령연금(의무개인계좌)

- 연금액은 가입자의 계좌 잔고에 기초해 결정됨. 퇴직 시 가입자는 연금(annuity)를 청구하거나 기금을 NDC계좌로 적립시킬 수 있음.

- 국가사회보장노령급여(사회부조,소득조사)

- 월 64.03유로가 지급. 급여는 수급자가 외국연금을 수령하면 비율에 따라 감액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연금액은 3개 장애그룹에 따라 계산됨

- 그룹1 : 월연금액은 $0.45 \times \text{지난 5년 중 연속된 3년의 평균소득} + \text{가입자의 평균임금} \times (\text{실제가입연(年)수} / 15 \text{세부터 퇴직연령 사이에 가입할 수 있었던 연(年)수}) \times 0.1$
- 그룹2 : 월연금액은 $0.4 \times \text{지난 5년 중 연속된 3년의 평균소득} + \text{가입자의 평균임금} \times (\text{실제가입연(年)수} / 15 \text{세부터 퇴직연령 사이에 가입할 수 있었던 연(年)수}) \times 0.1$
- 그룹3 : 월 64.03유로의 국가사회보장급여,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월 106.72유로
- 월 최소 장애 연금액은 그룹1의 경우 102.45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170.75유로), 그룹2의 경우 89.64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149.41유로), 각각 국가사회보장급여의 1.6배와 1.4배
- 자영자 및 임의가입자의 급여 계산을 위한 연 최저소득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12배
- 법정 최저 임금은 430유로
- 급여계산을 위한 연 최고소득은 55,000유로

- 급여조정 : 매년 10월 1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보험료 임금 지수에 따라 조정
- 국가사회보장장애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월 연금액은 측정된 장애그룹에 따라 64.03~83.24유로(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월 106.72유로) 지급
급여는 수급자가 외국연금을 받으면 비율별로 감액
- 장애인돌봄수당(기초) : 월 213.43유로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NDC)
 - 월연금액 : 수급자가 1명인 경우 사망자의 노령연금의 50%
수급자가 2명인 경우 사망자의 노령연금의 75% 균분
수급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노령연금의 90% 균분
 - 완전고아의 연금은 양쪽 부모의 노령연금에 기초한다.
 - 최저 유족연금월액은 6세까지의 자녀에게는 92.50유로(장애자녀일 경우는 106.72유로), 7세부터는 111.00유로 지급
 - 급여조정 : 매년 10월 1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보험료 임금 지수에 따라 조정
- 배우자급여(NDC) : 사망자의 노령, 장애연금 또는 산재연금 2개월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- 사망수당(NDC)
 - 사망자가 근로자 혹은 자영자라면 사망전 2월부터 마지막 12개월동안의 사망자 월 평균 소득의 2배, 사망자가 연금수급자라면 사망자의 NDC 노령, 장애 또는 산재연금.
 - 피부양가족 혹은 실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사회보장 급여의 3배.
 - 국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보장급여의 2배
 - 국가 사회보장급여는 월 64.03유로, 어린시절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 월 106.72유로
- 국가사회보장고아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6세까지의 자녀에게는 최소 월 92.50유로(장애자녀 일경 우는 106.72유로), 7세부터 111.00 유로 지급. 연금 수급자가 외국연금을 받으면 비례하여 감액

7. 관리운영기관

○ 복지부(Ministry of Welfare)

- <http://www.lm.gov.lv>
- 전반적 감독

○ 국가 사회보장청 (State Social Insurance Agency)

- <http://www.vsaa.gov.lv>

- 현금급여와 개인계좌 제도 운영
- 금융 자본시장 위원회 (Financial and Capital Market Commission)
 - <http://www.fktk.lv>
 - 개인계좌 자산관리 감독

<2018년 ISSA 자료>